

2019 〈공공기관 실무자 참고용〉 부패·공익 신고 및 보상 사례집

제18집

정령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국민권익위원회

| 일러두기 |

『2019년 부패·공익침해 신고 및 보호·보상 사례집』은 매년 공직사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주요 사례를 정리한 18번째 자료집입니다.

본 사례집은 조사관 조사결과, 수사·감사·조사기관의 결과를 포함한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 사건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금 등의 사례를 위원회 상정 순서에 따라 요약하고 정리한 사례집으로, 신고자가 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보호·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은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공직사회에서 동일·유사한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청렴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일반 국민에게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의 일부는 관계 기관에서 현재 감사·수사·조사가 진행되거나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목 차 |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1. 부패행위 신고사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포함)

0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	11
02. 학교법인 이사장의 교비 횡령 의혹	12
03. 공공기관 직원의 예산편취 의혹	13
04. 지자체 ○○원 견학비용 편취 의혹	14
05. 시립미술관 학예사 부패행위 의혹	15
06. 초등학교 직원의 횡령 등 의혹	16
07. 무료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7
08. 가상증강현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8
09. 한센생활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9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20
1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1
12. 사립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2
13. 기술혁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	23
14.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4
15.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비 부정수급 의혹	25
16. 농업소득직불금 부정수급 의혹	26
17. 모성보호육아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27
18.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28
19.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29
20.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30
21. 유연근무제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31
22.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32
23.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	33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24.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금품수수 의혹	37
25. 지방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	38

제2장 공익침해 신고사건

1. 공익침해 신고사건

01. 무허가 고압가스 충전 등 의혹	43
02.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행위 의혹	44
03. 폐수배출 허용 기준 초과 의혹	45
04. 마약 사용 및 유통 의혹	46
05. 사료제조업체의 불법 제품 제조·판매	47
06. 프랜차이즈 식당의 식육가공품 불법 소분 판매	48
07. 행정관청 실내건축공사의 무자격자 시공 의혹	49
08. 유람선 승선인원 정원초과 의혹	50
09. 응축수 무단 방류 의혹	51
10.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충전액 불법 유통·판매 의혹	52
11. 의료기관에서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유인 의혹	53
12.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방법 위반 등 의혹	54
13. 화학공장 고압가스 및 유독물 배관공사 부실 등 의혹	55
14. 안전인증 등 미완료 노트북 대량 제조·판매 의혹	56
15. 국가필수예방 접종백신(영유아용) 불법 보관 행위	57
16. 건설업 명의 대여 등 의혹	58
17. 허위의 인증 표시·광고 의혹	59
18. 가로수 무단 훼손 의혹	60
19. 보육교사 자격증 부정 취득 의혹	61
20.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의혹	62
21. 피부시술용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의혹	63
22. 산업재해 은폐 의혹	64
23. 식품운반업체의 유통·보존 기준 위반 의혹	65
24.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및 미신고(출장)의료행위 의혹	66
25. 병원내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67
26. 비거주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의혹	68
27.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위반 의혹	69
28. 두피관리기 광고 관련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	70
29. 산소발생기 및 고압산소챔버 광고 관련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	71
30.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정관리 의혹	72
31. 후원금 및 행사수익금 목적 외 사용 의혹	73
32.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	74

제3장 신고자 보상· 포상·구조

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01. 「병원 불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79
02.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80
03.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정산금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81
0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82
05.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83
06.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84
07. 「지자체 공무원의 급수공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85
08. 「중소기업융복합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86
09. 「국책연구과제 연구비 횡령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87
10. 「정부 연구용역 수탁업체의 연구비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추가 지급	88
11.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89
12.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90
13. 「무료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91
1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92
15.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93
16.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94
17. 「국악단체 문화예술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95
18. 「공기업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96
19.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97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20. 「사업장 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재판매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1
21. 「허위·과장 광고행위 의혹」 건 관련 구조금 지급	102
22. 「의료기관의 불법 광고행위」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3
23.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4
2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위반」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5
25. 「의약품 불법 보관」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6
26. 「의약품 임의변경조제」 건 관련 포상금 지급	107
27. 「○○병원 치과 비리 등」 건 관련 보·포상금 지급	108
28.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신고」 건 관련 구조금 지급	109
29. 「생활하수 무단방류」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0
30. 「아파트 건축 인·허가 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1
3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입찰비리 등 신고」 건 관련 구조금 지급	112
32. 「대주주들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3

제4장 참고자료

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117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20
3.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124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1_ 부패행위 신고사건

2_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부패행위 신고사건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7. 12.경 ○○시 ○○읍 ‘○○’ 음식점에서, ‘○○도서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협약’라는 허위의 명목으로 도서관 업무추진비 10만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2017. 12.경 ‘○○하나로마트’에서, ‘2017 ○○업무 협의회 실시’라는 허위의 명목으로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인 도서관 업무추진비 17만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행위가 경미하나, 수년간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어 도서관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교육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교육청 조사결과, 피신고자 2명 경고 처분
 - ※ 통보일자: 2019. 5. 13.
- 위원회 검토의견
 - ○○교육청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 등
- 착안사항 : 지출결의내용과 실제 지출한 영수증의 물품 구입항목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학교법인 이사장의 교비 횡령 의혹

분과
2019-95호

1분과위원회(2019. 4. 15.) 심사보호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해당 대학 교수의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수에게 손해배상금 6,000만 원 상당을 법인회계에서 집행 처리하여야 하나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18. 6.경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손해배상금 6,000만 원 상당을 부당 집행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20. 2. 12.
 - ○○부 조사결과, 해당 대학에 기관 경고 조치
 - ※ 통보일자 : 2019. 12. 16.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 착안사항 :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횡령 여부 확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불상지에서 ‘고○○’라는 타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2017.~2018.경 자신의 ○○우체국 전자 상거래 업무에 위 ‘고○○’의 금융계좌를 부정사용하여 우체국 전자상거래 업무 중 발생한 택배 수익금 978만 원을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결과, 피신고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1. 31.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 착안사항 : 지출결의내용과 실제 지출한 영수증의 물품 구입항목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지자체 ○○원 견학비용 편취 의혹

분과
2019-151호

1분과위원회(2019. 6. 10.) 심사보고국장

1. 의안개요

- ○○시 ○○원들은 노·사 단체협약서에 따라 매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1인당 17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피신고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선진지 견학비용 중 실제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의 비용까지 지급하여 참가인원들의 현지 경비로 사용한 의혹.

2. 의결이유

- 2017년 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5명(85만 원)에 대한 참가비용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실제 1명만 참가하고 나머지 4명은 불참하였음에도 불참자에 대한 참가비용을 환수조치(68만 원)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불법으로 집행된 참가비 51만 원을 확인하여 환수 조치
 - ※ 통보일자 : 2019. 8. 13.
- 위원회 검토의견
 - ○○도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나목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지출결의서 등을 확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0. 2월 00시립미술관에서 전시명 <00>을 기획하면서, 인건비 500만 원 상당을 부풀려 허위의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비를 낭비하고, 2000. 9월 전시명 <00>를 기획하면서, 인건비 500만 원 상당을 부풀리고, 1,077만원 상당의 실체 없는 벽체간막이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577만 원을 낭비함으로써, 총 2,077만 원의 시비를 낭비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설계한 전시기획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00도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00도 조사결과, 담당공무원 2명 훈계
 - ※ 통보일자 : 2019. 9. 16.
- 위원회 검토의견
 - 00도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나목
- 착안사항 : 설계내역서 상, 물량산출 소수점 두자리까지 동일하는 등 공사내역과 설계금액이 거의 유사한 점, '일위대가' 산출금액을 '표준품셈'에 적용하지 않고 과다 설계한 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제반 경비를 계상하지 않고 설계내역서를 작성한 점 등

초등학교 직원의 횡령 등 의혹

분과
2019-290호

1분과위원회(2019. 10. 21.)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공무원이 이혼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

2. 의결이유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부양가족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나, 수년간 수백만 원의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사기)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예산사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교육청으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교육청 조사결과, 부당수령한 가족수당 등 수백만 원 환수 조치
 - ※ 통보일자 : 2019. 12. 2.
 - 경찰청 수사결과, 부당이득편취 혐의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1. 30.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교육청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착안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분과
2019-55호

무료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9. 3. 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복지관 관장으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 평균 식수인원이 50명 미만임에도 90명 이상의 식수인원을 보고 하는 등 점심 식수인원을 실제 이용인원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시로부터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201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총 4회에 걸쳐 경로식당 무료급식 식수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약 3,048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2명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9. 7. 22.
 - ○○도 조사결과, 부정수급액 3,048만 원 환수, 관련자 1명 징계 조치
 - ※ 통보일자 : 2019. 5. 17.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제9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

가상증강현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분과
2019-87호

1분과위원회(2019. 4. 1.)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는 내부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8.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정부출연금지원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매달 약 180~220만 원의 내부인건비를 각 지급한 후, 이를 자신 명의의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9명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9. 5. 9.
 - ○○부 조사결과, 인건비 횡령 등 부정행위 확인되어 정부출연금 약 7,000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20. 3. 5.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보조금법 제22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한센생활시설의 대표자, 관리인, 생활보조요원으로,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시설에서 근무하지 않은 ○○○ 등 3명을 생활보조요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센생활시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등 3명을, 2019.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을 생활보조요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센생활시설 보조금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9. 6. 25.
 - ○○도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약 843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19. 7. 8.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제41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분과
2019-99호

1분과위원회(2019. 4. 1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8. 1.경 '2018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면서 참여의사가 없는 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팀원으로 등재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3천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8.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업에 참여의사가 없는 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팀원으로 등재하고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사기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9. 6. 28.
 - ○○부 조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 확인되어 2,796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19. 6. 14.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분과
2019-102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9. 4. 1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실제로는 야간보육교사 1명만이 근무하였음에도 보육교사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야간보육교사 2명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육료 지원금 등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4.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2명의 새벽근무 보육교사(24시간 보육)가 근무하도록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명의 새벽근무 보육교사만이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1명의 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9. 5. 9.
 - ○○시 조사결과,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실 확인 되어 부정수금액 1억 8,924만 원 환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1년 및 어린이집 폐쇄 처분
 - ※ 통보일자 : 2020. 5. 11.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사립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9. 4. 29.)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120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행정업무·전화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신의 딸을 방과후과정반 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유치원에서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신의 딸을 방과후과정반 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교육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 편취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9. 7. 2.
 - ○○교육청 조사결과, 방과후과정반 교사 허위 등록에 따른 지원금 및 교원 처우개선비 등 약 1,607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9. 7. 1.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교육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유아교육법 제34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타사에서 이미 개발한 제품을 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으며, 과제 수행을 위해 구입한 자재를 타사에 무단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6. 6.경부터 2018. 6.경까지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타사가 기 개발한 제품을 과제 수행을 통해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편취하거나, 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구입한 금형, 여과지 등의 자재를 타사에 무단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9. 10. 14.
 - ○○부 조사결과, 정부출연금 3억 2,628만 원 환수, 기관·기관대표·과제책임자에 대해 참여제한 각 5년 처분
 - ※ 통보일자 : 2020. 2. 10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5조·제356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제32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분과
2019-173호

1분과위원회(2019. 6. 2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면서 운행횟수를 ○○시로부터 인가받은 노선별 버스 운행 횟수보다 늘려 운행하고 유류비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17. 7.경부터 2019. 1.경까지 142개 노선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면서, 각 사업계획의 노선별 일일 운행횟수를 임의로 늘려 운행하며 유류비를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의혹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유가보조금 약 3,700만 원 환수,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담당 공무원 주의 처분
 - ※ 통보일자: 2019. 11. 5.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51조·제9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분과
2019-196호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9. 7. 1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아존중감 향상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면서 서류상과는 달리 자격이 없는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수백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별도의 강사 변경 신청이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서류와는 달리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하도록 한 후 인건비는 서류상 강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6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 교육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 교육청 조사결과, 지원금 부정수급 확인되어 600만 원 환수, 관련자 4명 징계 조치
 - ※ 통보일자 : 2019. 12. 26.
- 위원회 검토의견
 - ○○ 교육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농업소득직불금 부정수급 의혹

분과
2019-265호

1분과위원회(2019. 9. 2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년 간 ○○군 소재 농지 3필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경작한 것처럼 농업소득직불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군으로부터 농업소득직불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군 소재 농지 3필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고 이웃 농업인들에게 경작하게 하였음에도, 자신이 직접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것처럼 직불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군으로부터 농업소득직불금 약 118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농업소득직불금 부정수급액 약 118만 원 환수, 향후 3년 간 해당 필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 제한 조치
 - ※ 통보일자 : 2019. 12. 6.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피신고자2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금액미상의 일자리안정자금 등 부정수급하거나 피신고자2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묵인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2는 위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금액미상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2018. 9.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피신고자2를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약 136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2는 위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모성보호육아지원금 약 628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일자리안정자금 약 136만 원 환수, 해당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 통보일자 : 2019. 12. 24.
 - ○○부 조사결과, 산전후휴가급여 약 523만 원, 육아휴직급여 약 454만 원 등 총 977만 원 반환 조치, 피신고자2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0. 2. 3.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고용보험법 제73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분과
2019-303호

1분과위원회(2019. 10. 21.)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담자로 근무하던 인력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 경리 등 결산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 전담자에게만 지원되는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전담자에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체 업무분장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이외에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사업 전담인력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부정수금액 약 1억 4,775만 원 환수, 150일 지원·용자제한 조치
 - ※ 통보일자: 2020. 2. 27.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제62조의3
- 착안사항: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8. 2.경부터 (주)○○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월 급여액 일부를 숨기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본인과 자녀로 구성된 2인 한부모가족 및 기초주거급여 대상자로, 2018. 2.경부터 2019. 10. 현재까지 (주)○○에 취업하여 업무를 하며 매월 180만 원 이상의 근로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본인과 성명불상 명의의 두 개의 통장으로 나눠 받아 소득 일부를 숨기는 방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과 기초주거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한부모가족 보장 자격기준을 초과한 사실 확인되어 한부모가족 지원금 및 기초주거·교육급여 보장 중지, 기초주거·교육급여 약 370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19. 12.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분과
2019-358호

1분과위원회(2019. 11. 18.)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1.경부터 2019. 7.경까지 ○○군에 위치한 ‘○○의원’에서 근로의 대가로 금액 미상의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장기관인 ○○군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금액 미상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11.경부터 2019. 7.경까지 ○○군 소재 ‘○○의원’에서 근로 하면서 매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겨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과다하게 지원받은 의혹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근로소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초생계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 확인되어 약 1,180만 원 환수
 - ※통보일자: 2019. 12. 11.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 고

- 적용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 대표로, 2018. 6.경부터 회사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을 임의로 수정·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의 대표로, 2018. 6.경부터 2019. 5.경까지 유연근무제 실시 사업장으로 승인받은 후, 직원 10명이 시차출퇴근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출퇴근기록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부정수금액 및 추가징수액 9,915만 원 환수, 처분일로부터 12개월 간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 ※ 통보일자 : 2020. 2. 3.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9. 12. 23.)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453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2는 2019.경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중 (주)○○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활동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금액 미상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3은 (주)○○의 사업주로서 피신고자1,2와 공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2019. 6.경부터, 피신고자2는 같은 해 8.경부터 (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피신고자1은 약 752만 원, 피신고자2는 약 39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피신고자3은 사업주로서 피신고자 1,2와 공모한 의혹이 상당하므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 1~3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피신고자 1,2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2,082만 원 환수, 실업급여 지급제한 처분
 - ※통보일자 : 2020. 3. 4.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 고

- 적용법령 :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제11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친인척 등을 수급자로 허위 등록하거나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노인복지센터 대표자로, 2017. 4.경부터 2019. 3.경까지 친인척 등 5명을 수급자로 허위 등록한 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등 5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혹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공단 조사결과, 부당청구액 약 5,774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20. 1. 8.
- 위원회 검토의견
 - ○○공단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37조·제43조·제6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0.경 ~ 2015.경 ○○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연구과제수행을 위해 연구 재료를 구매하면서 업체로부터 허위 납품 받은 의혹.

2. 의결이유

- 해당 금품수수 의혹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에 해당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에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물품 구매과정에서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사기 및 특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17. 5. 29.
 - ○○부 조사결과,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직원 당연면직
 - ※ 통보일자 : 2020. 2. 27.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129조, 제356조
- 착안사항 : 연구개발 계획서, 장비구매 현황 등 확인

지방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

분과
2017-398호

1분과위원회(2017. 12. 26.) 구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7년경 ○○공사에서 운영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개발공사 직원들을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참여시켜 매우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사의 이익을 도모한 의혹.

2. 의결이유

- 관련자 진술 및 내부직원들에게 발송된 문자, 내부 업무망 게시물 등을 통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확인되고 피신고자들의 공모 또는 지시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에 일반인처럼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과 ○○도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결과, 기소의견 송치 1명
 - ※ 통보일자 : 2018. 12. 20.
 - ○○도 : 불문경고 1명, 주의 3명
 - ※ 통보일자 : 2019. 1. 19.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137조
- 착안사항 : 언론보도로 인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으로, 제출 자료와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신빙성 확인

제2장

공익침해 신고사건

1_ 공익침해 신고사건

제2장

공익침해 신고사건

공익침해 신고사건

1. 의안개요

- 선박의 냉동고를 수리하는 피신고업체가 냉동고(고압가스용기) 수리 후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고압가스를 충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위원회와 ○○시 ○○구 및 ○○공사의 현장 조사결과, 피신고업체가 무허가 고압가스 충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피신고업체 고발
(검찰청 : 피신고업체 및 대표에 대해 각 구약식 처분)
※ 통보일자 : 2019. 12.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5조제3항·제17조제1항·제39조·제40조
- 착안사항 : 고압가스 충전허가 여부 및 용기 등 검사방법 준수 여부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행위 의혹

분과
2019-53호

2분과위원회(2019. 3. 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총 15차례에 걸쳐 ○○ 지역에서 은퇴한 노년층과 주부 등 금융정보에 어두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10,000달러를 기본투자금액으로 하여 투자할 경우 가상화폐 매입 등을 통해 약 1년 뒤에는 약 2.7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미상의 금전(500억 원 추정)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검색 시 피신고자는 인·허가 등을 받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조치가 되지 않으며, 신고자가 제출한 투자설명회 녹취파일 및 사진자료를 볼 때 피신고자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2019. 8. 7.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 착안사항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검색결과, 신고자 제출 녹취파일 확인

폐수배출 허용 기준 초과 의혹

2분과위원회(2019. 3. 18.)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폐수수탁처리업체인 피신고자가 공장 내에 비밀관을 만들어 폐수를 적법하게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 방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위원회, ○○도, ○○청의 현장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배출하는 방류수가 방류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신고자의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및 수질초과배출부과금 2억 2,509만원 부과
 - ※ 통보일자 : 2019. 4. 18.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 착안사항 : 공장 내 비밀관의 유무 및 폐수의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마약 사용 및 유통 의혹

2분과위원회(2019. 4. 1.)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83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은 자신의 직원을 시켜 피신고자 3.으로부터 마약(필로폰)을 가져오도록 하여 피신고자 2.와 함께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1.과 피신고자 3.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녹음파일 등을 확인하였을 때, 피신고자 1.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 피신고자 1.과 3. 불구속 기소
 - ※ 통보일자 : 2020. 1. 7.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58조·제60조
- 착안사항 : 마약 매매 및 사용 여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애완견용 사료 제조업체 대표로, 해당 지자체에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사료를 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행위는 「사료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영업정지(45일) 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
 - ※ 통보일자 : 2019. 5. 14.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사료관리법 제12조
- 착안사항 : 사료의 성분 등록 여부

프랜차이즈 식당의 식육가공품 불법 소분 판매

분과
2019-120호

2분과위원회(2019. 4. 2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식육가공 전문업체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매장 내 조리된 식품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장 판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조리되지 않은 식육가공품을 불법 소분하여 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구,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도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 수사기관 고발
 - ※ 통보일자 : 2019. 5. 17, 2019. 5. 21.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 착안사항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행정관청 실내건축공사의 무자격자 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9. 5. 1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도 ○○군 ○○면은 면사무소 실내 보수공사, 휴게실 설치공사 등 3건의 건축공사를 무등록업자인 피신고자에게 도급하였고, 피신고자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해당 공사를 시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피신고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조회한 결과 무등록 업체로 확인되며, ○○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조회결과,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입금명세서, 공사현장사진 등을 통해 피신고자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한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
 - ※ 통보일자 : 2019. 9. 17.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 착안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한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및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한 도급공사 여부 확인

유람선 승선인원 정원초과 의혹

분과
2019-157호

2분과위원회(2019. 5. 1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유선사업자로서 유람선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 인원을 초과하여 탑승시킨 후 선박을 운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군에 소재한 유선사업자로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여객을 승선시킨 후 선박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2. 24.
 - ○○도 :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 고

- 적용법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제12조·제40조, 선박안전법 제8조·제84조
- 착안사항 : 정원을 초과하여 여객을 승선시켜 선박을 운행하였는지 여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자로서,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응축수)을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하수도로 방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서와 동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피신고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응축수)을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기관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19. 9. 4.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78조
- 착안사항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응축수) 무단방류 행위 여부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충전액 불법 유통·판매 의혹

분과
2019-184호

2분과위원회(2019. 6. 1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해당 관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충전액’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확인한바, 피신고자의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3. 11.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 수사의뢰
 - ※ 통보일자 : 2019. 8. 2.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 착안사항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여부

의료기관에서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유인 의혹

2분과위원회(2019. 6. 1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영업사원들이 모집·알선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대가로 영업사원 등에게 알선 수수료로 지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제출된 증거자료의 내용을 보면 피신고자가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영업사원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있다. 이는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수사(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시,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3. 24.
 - ○○시, ○○공단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 제88조
- 착안사항 : 환자 유인, 알선 여부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방법 위반 등 의혹

분과
2019-187호

2분과위원회(2019. 6. 1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이라는 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한 기본조건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광범위하게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관계당국의 품목허가를 유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직원들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발송한 메일, 해당 메일에 첨부된 각종 내부자료, 피신고자 내부보고서(업무보고서 등), 피신고자 내부회의 내용을 정리한 직원의 업무용 수첩 사본 다수, 피신고자 생산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생산관리문서, 피신고자 업무일지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처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처 조사결과, 행정조치 및 고발
 - ※ 통보일자: 2019. 8. 20.
- 위원회 검토의견
 - ○○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62조, 제71조 등
- 착안사항 : 신고자 제출자료(내부메일 및 보고서 등) 확인

화학공장 고압가스 및 유독물 배관공사 부실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9. 6. 1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하도급업체 ○○(주)는 ○○ 공장 배관 용접부위에 대하여 허위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원도급업체 □□(주)는 이를 알고도 공사기간 지연을 이유로 은폐한 의혹 등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건설산업 기본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일부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2. 20.
 - ○○부,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 고

- 적용법령 : 건설산업 기본법 제81조, 건설기술 진흥법 물환경보전법 제5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착안사항 : 배관 용접부위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였는지 여부

안전인증 등 미완료 노트북 대량 제조·판매 의혹

분과
2019-221호

2분과위원회(2019. 6. 2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은 피신고자 2.가 운영하는 클라우드펀딩 중개사이트를 통해 2~30만 원대의 노트북 컴퓨터 약 20억 원어치(약 6~7,000대)를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2.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1.은 2019. 1. 22. ~ 2019. 2. 21. 기간 500만 원을 목표 금액으로 하여 노트북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을 모집한 것이 확인되며, 소비자들의 안전인증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한 피신고자 1.의 해명자료를 고려할 때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원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원 조사결과, 피신고자1. 고발 및 행정조치 의뢰
 - ※ 통보일자 : 2019. 7.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원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40조, 제49조
- 착안사항 :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

국가필수예방 접종백신(영유아용) 불법 보관 행위

2분과위원회(2019. 7. 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인증 보관업체에 의약품을 위탁 보관하는 조건으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았으나, 백신제품 및 전문 의약품 등을 수개월간 불법으로 자신의 사무실 냉장고와 건물 내 빈 공간에 보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생물학적 제제 및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보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경찰청,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19. 8. 28.
 - ○○도 ○○시 조사결과,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1,530만원)
 - ※ 통보일자 : 2019. 12. 2.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 ○○시 수사(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5. 비 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47조
- 착안사항 :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준수 여부

건설업 명의 대여 등 의혹

분과
2019-234호

2분과위원회(2019. 7. 15.)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은 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자신의 친구인 피신고자 4.가 운영하는 피신고자 2.의 건설업 명의를 빌려서 '○○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피신고자 3.이 '하수급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피신고자 1.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1. 및 2.와 보온공정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직불동의서 및 이행확약서를 통해 피신고자들의 불법 재하도급을 했다고 보여지며, 보온작업 근로자와 피신고자 1. 간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피신고자들의 건설업 명의 대여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19. 9. 25.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29조, 제95조의2, 제96조
- 착안사항 : 건설업 명의 대여 여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수처리 약품을 ○○시 등에 납품하면서 해당 제품이 ISO9001, ISO14001 인증 및 Q마크 획득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해당 인증서는 위·변조된 것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인증원 확인결과, 피신고자는 과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였다가 2011. 8. 4. 취소되었고, ISO14001 인증은 2016. 8. 26. 취소된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위원회 조사결과, 피신고자 경고처분
 - ※ 통보일자 : 2019. 10. 31.
- 위원회 검토의견
 - ○○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착안사항 : 인증서 위·변조 및 허위 표시·광고 여부

가로수 무단 훼손 의혹

2분과위원회(2019. 9. 23.)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312호

1. 의안개요

- 신원 미상의 자 3명이 2019. 8. 31. ○○시 ○○구 ○○로 소재의 건물 앞 가로수 3그루를 훼손하였는데, 이는 해당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이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수를 훼손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시 공원녹지과 문의결과 해당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을 승인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가로수의 훼손에 따라 특정 광고물이 더 명확히 보이는 것이 사진자료 등으로 확인되어 피신고자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피신고자 색출을 위한 수사의뢰 및 피신고자 특정 시 훼손자 부담금(86만원) 부과 예정
 - ※ 통보일자 : 2019. 10. 21.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74조
- 착안사항 : 가로수 가지치기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의 보육교사 3급 자격증 부정 취득이 의심되며, 피신고자 2가 피신고자 1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 의혹이 있음. 또한 피신고자 3은 보육실습시간을 온전히 이수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들을 검토한바, 피신고자 1이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교육훈련 시설의 교육과정과 보육실습을 이수하기 곤란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당시 피신고자 2의 지원이 의심되고, 또한 피신고자 3도 ○○군 아르바이트 참여로 보육실습 시간을 이수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 및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의뢰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48조
- 착안사항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의혹

분과
2019-333호

2분과위원회(2019. 10. 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는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기관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처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조사결과, 영업정지 62일 및 수사기관 고발 (기소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
- 착안사항 : 식품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여부

피부시술용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의혹

2분과위원회(2019. 10. 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 인증받은 피부 시술용 의료기기와 다른 내용의 제품을 제조·유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유통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유통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처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처 조사결과, 행정처분 의뢰 및 판매중지 · 회수 등 명령
- 위원회 검토의견
 - ○○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 착안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 여부

산업재해 은폐 의혹

2분과위원회(2019. 10. 7.) 심사보호국장

분과
2019-346호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7. 12. 20.경 근로자 최○○이 작업 중 종아리 근육 및 힘줄이 손상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무사고 목표관리 등을 이유로 ○○부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재해자로 하여금 병가를 사용하여 치료 받도록 하고 병원비는 소속 직원들로부터 1인당 4만원씩 걷어서 처리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보고서만으로는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교사·방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 역시 미제출되었음. 그러나 신고자가 제출한 사고보고서에는 해당 사고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피신고자들의 위반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과태료 부과(700만 원)
 - ※ 통보일자 : 2020. 3. 19.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68조
- 착안사항 : 산업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는지 여부

식품운반업체의 유통·보존 기준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9. 10. 21.)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식품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납품할 냉장·냉동 식품을 운반차량에 옮기기 전에 상온에 방치하고 거래업체에 식품 납품 시 매장 외부에서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냉장·냉동 식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장시간 보관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이러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처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과태료 부과(100만원)
 - ※ 통보일자 : 2019. 12. 11.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적용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 착안사항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및 미신고(출장)의료행위 의혹

분과
2019-418호

2분과위원회(2019. 11. 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역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으로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은 장소로 출장검진을 하면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제출된 증거자료의 내용을 보면 피신고자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로 출장하여 다수의 일반 인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무자격자에게 건강검진을 시킨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조사결과, 자격정지 3월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 통보일자: 2019. 12. 2.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 제33조, 제87조, 지역보건법 제23조 등
- 착안사항 : 출장검진 신고 및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지시 여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료분야 관련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환자들에게 피하근육 주사, 드레싱, 혈액채취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제출된 증거자료의 내용을 보면 피신고자 소속 병원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에 병원 관계자들이 피신고자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알려주는 내용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기관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의료인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 수사기관 고발 조치
 - ※ 통보일자 : 2019. 11. 29.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 제66조, 제87조 등
- 착안사항 : 병원내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행위 시행 여부

비거주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의혹

분과
2019-426호

2분과위원회(2019. 11. 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그 외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 한해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단독주택 전체를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민박 광고내용, 이용 후기, ○○비 예약현황 등을 제출하였으며, 광고의 내용에 “집 전체”, “독채”, “무인시스템” 등과 같이 피신고자들이 단독주택 전체를 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 확인되어 개선명령
※ 통보일자 : 2020. 1. 21.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제88조, 제89조
- 착안사항 :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9. 11. 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주택임대사업자인 피신고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임대차 계약서 중 피신고자에게 불리한 조항(제9조)을 임의로 수정 내지 삭제하여 사용하는 등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임대사업자이나, 피신고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이 수정 내지 삭제되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신고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시,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조사결과, 과태료 부과(250만원)
 - ※ 통보일자 : 2020. 2. 17.
 - ○○도 ○○시 조사결과, 과태료 부과(250만원)
 - ※ 통보일자 : 2019. 12. 11.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및 ○○도 ○○시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 착안사항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

두피관리기 광고 관련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

분과
2019-438호

2분과위원회(2019. 11. 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두피관리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을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두피관리기를 광고하면서 “탈모의 원인이 되는 손상된 두피조직 회복”, “모세 혈관 자극을 통해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신고자의 광고내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19. 12. 17.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기기법 제26조
- 착안사항 :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

산소발생기 및 고압산소챔버 광고 관련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9. 11. 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산소발생기’ 및 ‘고압 산소챔버’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을 통증 치료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산소발생기’ 및 ‘고압산소챔버’를 광고하면서 “통증 감소”, “염증 감소”, “감염 방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신고자의 광고내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3. 5.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기기법 제26조
- 착안사항 :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정관리 의혹

분과
2019-445호

2분과위원회(2019. 11. 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동주택 인테리어공사 업체가 납부해야할 공사예치금 및 주차장 사용료와 청소비를 개인계좌로 입금 받았고, 업체들의 공사예치금 등의 환급 또한 해당 개인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적 수익편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개인계좌로 인테리어공사 업체의 공사예치금 등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가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
 - ※ 통보일자 : 2019. 12. 23.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98조
- 착안사항 :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후원금 및 행사수익금 목적 외 사용 의혹

2분과위원회(2019. 11. 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축제는 체험부스 및 바자회 등의 행사로서 행사수익금 및 후원금으로 현금수입이 예상되나 축제결과보고에서는 행사수익금을 제외한 후원금만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어, 행사 수익금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현금수입이 있는 ○○축제에서 일부 후원금 수입만 세입에 포함되고 다른 현금후원금과 행사수익금의 회계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복지관의 현금수입 관리 과정 등 신고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법인으로 진출된 행사 후원금 등을 복지관으로 반환 명령 및 법인에게 과태료 부과 예정
 - ※ 통보일자: 2019. 12. 18.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45조, 제58조
- 착안사항 : 행사 수익금이 후원금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

분과
2019-428호

1분과위원회(2019. 12. 2.)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대부중개업자인 피신고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대출상품을 광고하면서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명칭을 사용하였음.

2. 의결이유

- 대부중개업자인 피신고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신고자의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480만원)
 - ※ 통보일자 : 2020. 2. 14.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 적용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 착안사항 :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

제3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1_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2_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제3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병원 불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3. 18.) 보상심의위원회(2019. 3. 8.)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병원 불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5,746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병원에서 ○○치료방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에게 이를 실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병원에서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 5,746만여 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3,79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제2019-100호

전원위원회(2019. 3. 18.) 보상심의위원회(2019. 3. 8.)

1. 의안개요

- 대상자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대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 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대상자는 공공기관인 ○○자원관 관장 및 직원들이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메일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내 인사·채용 규정까지 개정하는 등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자원관 관장이 해임되는 등 처벌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직원 채용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회의 경종을 울려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정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4. 29.) 보상심의위원회(2019. 4. 19.)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정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6억 1,500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전력거래소의 전력수요관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객기준부하(CBL)를 조작하여 전력수요관리사업자 등록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전력거래소로 약 5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전력거래 정산금 6억 1,500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26,103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19-148호

전문위원회(2019. 4. 29.) 보상심의회위원회(2019. 4. 19.)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2,652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대학교 교수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인건비 횡령, 연구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연구개발비 4억 2,652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신청인이 신고한 연구과제들 중 증거서류 제출이 없는 일부 과제에 대하여 신고의 정확성 관련으로 30% 감액함.

3. 결정결과

- 금 94,28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감액사유 존재 여부 및 감액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4. 29.) 보상심의위원회(2019. 4. 19.)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773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어린이집 대표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해당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한 보조금 3,773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1,319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19-164호

전문위원회(2019. 4. 29.) 보상심의위원회(2019. 4. 19.)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147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중소기업청 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작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서 부정수급한 보조금 4,147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2,442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지자체 공무원의 급수공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4. 29.) 보상심의위원회(2019. 4. 19.)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지자체 공무원의 급수공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437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경기도 ○○시 수도과 급수팀장이 급수공사 시공업자로부터 967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1,437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아 결정된 보상금의 50%만 보상금으로 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2,155,5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포상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추징금이 있어 보상금 신청 안내

「중소기업융복합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19-246호

전문위원회(2019. 6. 10.) 보상심의위원회(2019. 5. 30.)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중소기업융복합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1,160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 용도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술개발 사업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1억 1,160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20% 감액함.

3. 결정결과

- 금 25,85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부패행위 가담 여부 및 감액율

「국책연구과제 연구비 횡령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7. 15.) 보상심의위원회(2019. 6. 27.)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국책연구과제 연구비 횡령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5,299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다수의 기관에서 지원하는 R&D사업을 수행하면서 협력업체와 공모하여 개발에 필요한 재료의 가격을 부풀려 결제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1억 5,299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7,419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정부 연구용역 수탁업체의 연구비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추가 지급

제2019-386호

전문위원회(2019. 8. 19.) 보상심의위원회(2019. 8. 2.)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정부 연구용역 수탁업체의 연구비 편취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5억 7,916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대학교 LINC사업단의 산학협력업체인 A업체의 대표가 여러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구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5억 5천 7,916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71,85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보상금 결정액 121,083천 원에서 기 지급액 제외)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문위원회(2019. 8. 19.) 보상심의위원회(2019. 8. 2.)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농업협동조합이 ○○시로부터 벼 건조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신청인이 위원회에 위 신고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제3자가 ○○시에 같은 사안에 대해 신고를 했던 점, 보조금 환수 결정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위 신고와 ○○시의 보조금 환수처분 등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 착안사항 : 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간 직접적 관련성 여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19-433호

전원위원회(2019. 9. 23.) 보상심의위원회(2019. 9. 5.)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98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사실을 속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498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49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무료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10. 21.) 보상심의위원회(2019. 10. 11.)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무료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5,823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노인복지관 관장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하면서 무료급식 식수인원을 부풀려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무료급식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무료급식지원금 3,048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고, 다음연도 지원금 2,775만 원의 비용절감이 있으며, 위 환수결정 및 비용절감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7,469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비용절감의 인정 여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19-491호

전문위원회(2019. 10. 21.) 보상심의위원회(2019. 10. 11.)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9,498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주)○○기계 대표가 처음부터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미 개발되어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신규 개발할 것처럼 속이고, 연구개발비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9,498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8,49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12. 23.) 보상심의위원회(2019. 12. 12.)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2억 583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셀프주유소 소장과 화물차주들이 공모하여 실제로 주유한 양보다 더 많게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승용차에 휘발유 등을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유가보조금 12억 583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량들에 대해서는 신고의 정확성 관련으로 30% 감액함.

3. 결정결과

- 금 107,01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감액사유 존재 여부 및 감액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19-622호

전문위원회(2019. 12. 23.) 보상심의위원회(2019. 12. 12.)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6,654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병원 대표가 근무하지 아니한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대여하고, 저가 치료를 실시한 것을 고가치료를 한 것으로 대체하여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등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 1억 6,654만여 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9,31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국악단체 문화예술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12. 23.) 보상심의위원회(2019. 12. 12.)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국악단체 문화예술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8,613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국악단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공연을 주관하면서 공연참가자들의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 문화예술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문화예술 지원금 8,613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5,841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공기업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제2019-632호

전문위원회(2019.12. 23.) 보상심의위원회(2019.12. 12.)

1. 의안개요

- 대상자는 「공기업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대상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대상자는 공공기관인 ○○공단의 인적자원팀장이 공단의 인쇄물 제작 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해당 인쇄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행위로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의 피신고자들이 「형법」 상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해당 처벌이 위 신고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상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위 신고에 의하여 ○○공단 인적자원팀장이 파면,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만원의 형사 처벌등을 받음으로써 공직자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및 제7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피신고자가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 받는 경우에도 해당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12.23.) 보상심의위원회(2019.12.12.)

1. 의안개요

- 대상자는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대상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대상자는 사립대학교인 ○○대학교 총장이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관들에게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할 것을 청탁하고 이에 면접관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접평가를 중단했으며, 해당 대학교 경영지원팀장은 면접관들에게 해당 총장이 지시한 지원자들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중용한 의혹 등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부정청탁(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위반한 행위(청탁금지법 제6조)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해당 대학교 경영지원팀장 및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 면접관이 해임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및 제7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10,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청탁금지법 제5조·제6조·제15조 제5항 및 제7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 인지 여부

제3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사업장 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재판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2. 18.) 보상심의위원회(2019. 1. 17.)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청소용역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남은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를 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900만여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에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부당이득금 2,900만여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5,877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5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허위·과장 광고행위 의혹 건」 건 관련 구조금 지급

제2019-47호

전원위원회(2019. 2. 18.) 보상심의위원회(2019. 1. 17.)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한 위조 인증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하였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청인의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피신고업체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당하게 된 무고 혐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공익신고로 인한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것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 해당함.
- 피신고자의 무고혐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의 경우 위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다만, 해당 변호사 비용은 ‘원상회복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형사소송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유추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150만 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구조금 1,500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신고인지 여부, 신고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

「의료기관의 불법 광고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3. 18.) 보상심의위원회(2019. 3. 8.)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의 불법 광고행위를 ○○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30만여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330만여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675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5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19-112호

전문위원회(2019. 3. 18.) 보상심의위원회(2019. 3. 8.)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시 ○○군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440만여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440만여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88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5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4. 29.) 보상심의위원회(2019. 4. 19.)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인 ○○승마장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 위반사항을 ○○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50만여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15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3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5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의약품 불법 보관」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19-245호

전원위원회(2019. 9. 23.) 보상심의회위원회(2019. 9. 5.)

1. 의안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고업체 ○○제약(주)가 각 대리점으로 유통하였다가 반품된 의약품들을 「약사법」에 명시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창고를 임차하여 불법 보관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710만여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들의 신고내용이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1,710만여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3,4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신청인 2명에게 각각 1,710천 원 지급)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5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의약품 임의변경조제」 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8. 19.) 보상심의위원회(2019. 8. 2.)

1. 의안개요

-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소재 약국의 약국장이 수년간 항생제 등 의약품 등을 임의로 무게 변경조제 하고 있음을 관할 보건소 및 경찰청에 신고함.
- 위 대상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 해당함.
- 대상자의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 대한 약사면허가 취소되는 등 공익증진을 가져왔음이 인정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대상자에게 포상금 10,000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신고인지 여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익증진을 가져왔는지 여부 등

「○○병원 치과 비리 등」 건 관련 보·포상금 지급

제2019-372호

전원위원회(2019. 8.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병원 치과 비리 등」 건을 ○○병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의 위 신고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른 신고라고 할 수 없어 부패보상금 지급신청은 기각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병원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하면서 병원의 수납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치료를 한 의혹 등이 있다고 ○○병원에 신고함.
- 위 신고는 ○○병원에 신고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상 '이 법에 따른 신고'라고 할 수 없음.
- 다만, 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3억 3,500만여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왔으며, ○○병원의 치료재료 처방시스템 개선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0,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6조·제68조 제1항 및 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 착안사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른 신고인지, 부패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익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공익포상금 지급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신고」 건 관련 구조금 지급

전문위원회(2019. 9. 23.) 보상심의위원회(2019. 9. 5.)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경기도 ○○시 소재 공장의 비산먼지 억제 시설 미비 및 비산먼지 배출을 경기도 ○○시에 신고한 후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과 진료비 등을 지출 하였으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구조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2. 심의내용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비 및 비산먼지 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함.
- 신청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한 기명의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공익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 또한, 보호사건에 대한 위원회 및 인천지검 ○○지청의 판단도 신청인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구조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구조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7조
- 착안사항 : 공익신고인지 여부 등

「생활하수 무단방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19-512호

전원위원회(2019. 10. 21.) 보상심의위원회(2019. 10. 11.)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주)○○이 ○○마을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군청과 협약을 체결한 후,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1일 100~150톤의 생활하수를 무단방류하였다고 ○○지방환경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하수도법」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60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1,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5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아파트 건축 인·허가 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12. 2.) 보상심의위원회(2019. 11. 14.)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아파트 건축 공사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 및 시행사 간의 유착관계 등 비리 의혹을 ○○경찰서 소속 정보관에게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하였음을 확인 및 인정할 수 없는바,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이 신청건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관계 경찰서에서도 이 신청건의 제보자 정보가 없다고 회신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최초 진술자 또한 신청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신청인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을 이 신청건 신고의 제보자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
- 착안사항 : 공익신고 여부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입찰비리 등 신고」 건 관련 구조금 지급

제2019-655호

전문위원회(2019. 12. 23.) 보상심의위원회(2019. 12. 12.)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전시·행사 등의 용역 입찰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의혹 등을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제 전보 등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이 지출한 정신과 진료비는 공익신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강제 전보 등 불이익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해당 비용은 공익신고로 인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통원 치료비 지급 상한액이 500,000원이므로, 신청인에게 지급 상한액인 500,000 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구조금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2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신고인지 여부, 피해 발생 또는 비용 지출 여부, 신고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9. 12. 23.) 보상심의위원회(2019. 12. 16.)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등(소속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대주주등에 대하여 불법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억 4,8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 및 대주주 등 4명, 총 5명에 대하여 총 2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970만 원을 공제하고, 피신고자 중 1인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지급 보상금을 신청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33,400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4.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5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신고인지 여부, 신청인이 내부신고자인지 여부,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이 있는지 여부 등

제4장

참고자료

- 1_ 부패 · 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 2_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3_ 부패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1. 부패 · 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1. 부패신고 제도(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

①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5조 ~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제64조

② 신고 주체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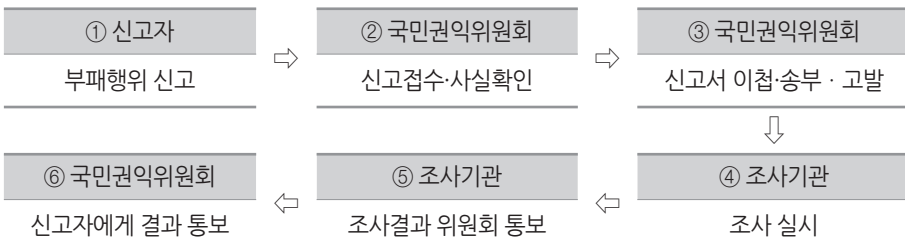
- (주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특히 공직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방법) 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②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③ 신고 대상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음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④ 신고 처리절차



|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조사기관)
|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익위→고등법원)

2. 공익신고 제도

①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2조

② 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음
- (방법)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익신고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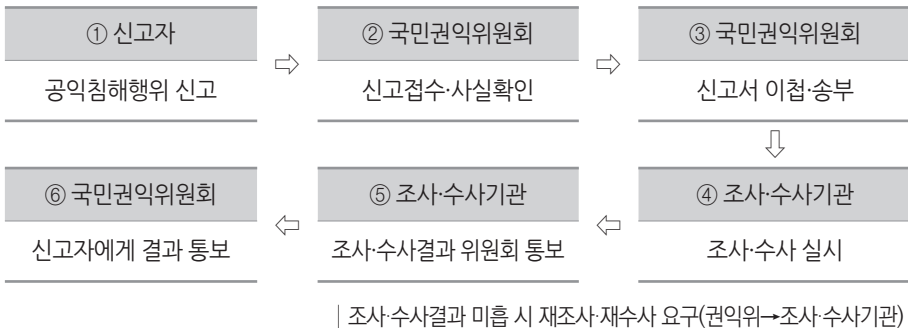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③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④ 신고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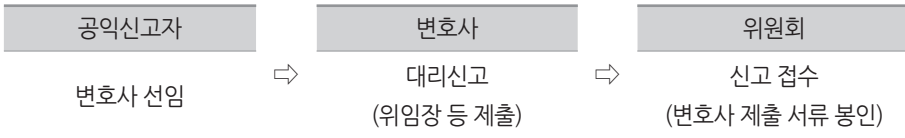
- 위원회 신고 처리절차



- (조사·수사기관의 처리)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
- (대표자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협조 요청
※ 대표자들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이송
-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이송

5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개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자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8. 10. 18. 시행)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법 제8조 의2) 신설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증거자료 제출이나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 등도 대리 가능
- (제출 서류)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봉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위원회 신고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 불가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원회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수당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자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는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
 - ※ 신고자로부터 대리신고 관련 비용을 지급받으면 비용 지원 불가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①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증인 심문시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 등의 조치가 가능함(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

② 신분보장

-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원상회복 조치,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의 지급,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 ※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6)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
 -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③ 신변보호

- 신고로 인해 신고자·협조자·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④ 책임감면

- (책임의 감면)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 (직무상 비밀의무 준수 배제) 신고한 경우 다른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제3항)

⑤ 기타 보호제도

- (불이익 추정) 신고한 뒤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
 - ※ 불이익 추정 관련 규정은 신고자의 경우에만 적용됨
-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2항)
 -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 (화해권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의2)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①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제5항)
 -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신분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 조치의 종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0조)
 - ※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 (특별보호조치 결정)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

③ 신변보호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고자·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④ 책임감면

-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1항)
-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 요구(『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
 - ※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 규정은 무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

5 기타 보호제도

-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 (화해권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 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
- (징벌적 손해배상)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3. 부패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1. 부패신고자 보상 · 포상 · 구조 제도

1 보상금

- (신청요건)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

- 물수 또는 추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벌금 · 과료 ·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지급금액) 보상대상가액의 4% ~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 원

■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사유 등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비 고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3억 2천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40억 원 초과	4억 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3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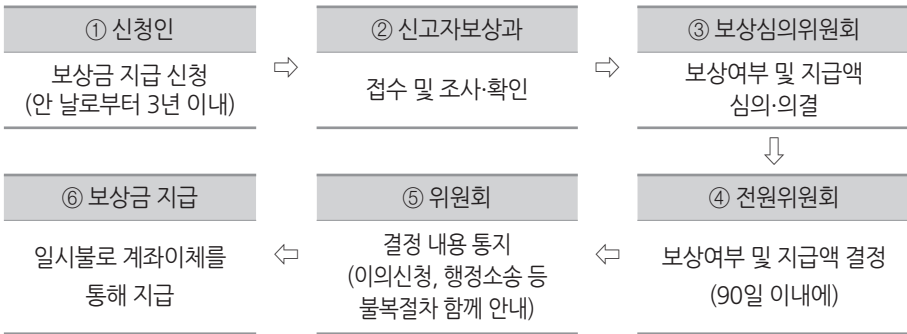
감액
사유

- ▷ 부패행위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부패신고의 정확성 정도
- ▷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 신고자가 부패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지급 제한 사유	▷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공제 사유	▷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1.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많으면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으면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함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 금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금 지급 절차



② 포상금

- (지급요건)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포상금을 지급(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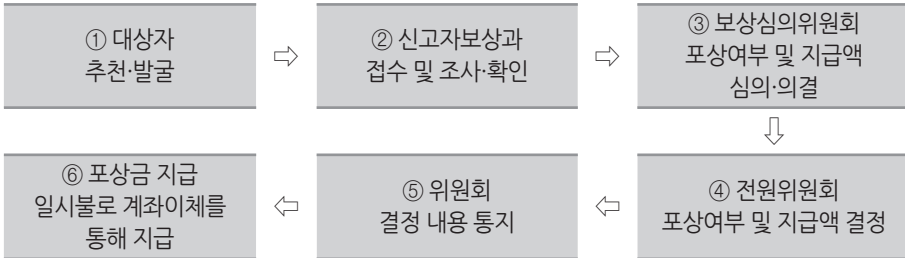
◎ 포상금 지급 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 기소유예 · 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공공기관이 포상금 지급 요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19. 10. 17. 이후 부패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급금액)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포상금 지급 절차



③ 구조금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3항)

◎ 피해·비용 지출 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구조금 지급은 '19. 10. 17. 이후 부패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제도

① 보상금

- (신청요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

- 벌칙·통고 처분, 물수·추징금 부과
- 과태료·이행강제금,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손해배상·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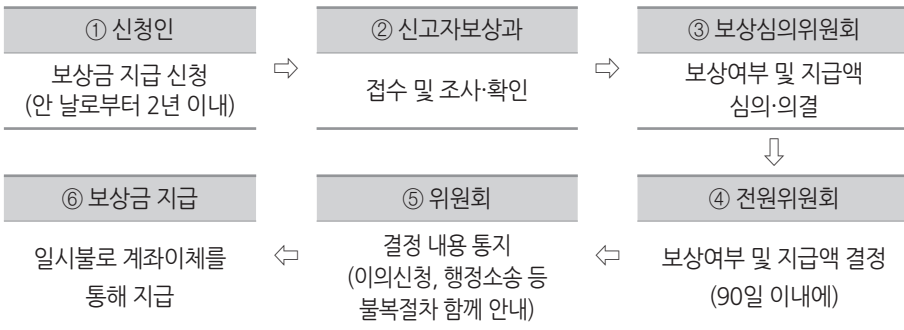
- (지급금액) 보상대상가액의 4% ~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원 초과액~최고 30억원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사유 등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비 고
1억 원 이하	2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천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14%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 6백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10%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2억 2천 6백만 원+20억 원 초과금액의 6%	
40억 원 초과	3억 4천 6백만 원+40억 원 초과금액의 4%	최대한다 30억

감액 사유	▷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지급 제한 사유	▷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중사 중이거나 중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공제 사유	▷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 (이하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많으면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으면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함

■보상금 지급 절차



② 포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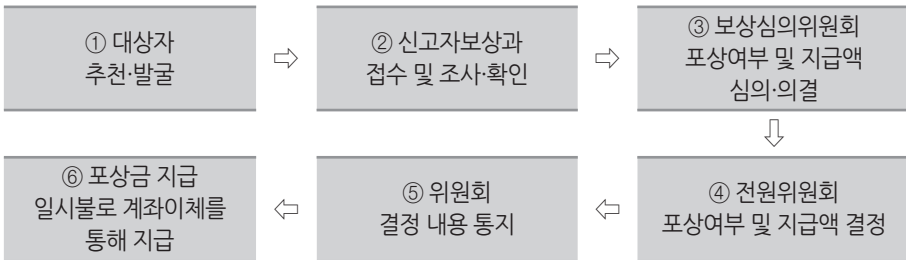
- (지급요건)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내·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 포상금 지급 사유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의 선고,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외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지급금액)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포상금 지급 절차



③ 구조금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 피해·비용 지출 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